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7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예 산(B)			금 회 추 경	증가율 (%)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합 계	219,250,987	193,652,400	185,243,097	8,409,303	25,598,587	13.2
일반회계	182,154,449	162,727,395	154,287,092	8,440,303	19,427,054	11.9
특별회계	37,096,538	30,925,005	30,956,005	△31,000	6,171,533	20.0
의료급여	41,394	42,270	42,270	-	△ 876	△2.1
주차장	37,055,144	30,882,735	30,913,735	△31,000	6,172,409	20.0

※ 세입 간주처리(9회)

(단위 : 천원)

구 분	계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 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합 계	59	8,409,303	9	6,277,752	9	37,701	38	2,074,784	3	19,066
일반회계	57	8,440,303	9	6,277,752	9	37,701	36	2,105,784	3	19,066
특별회계	2	△31,000		-		-	2	△31,000		-

Ⅱ. 추정재원 — 25,598,58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사 용 잔 액
합 계	25,598,587	21,861,746	2,000,000	1,736,841
일반회계	19,427,054	15,990,906	2,000,000	1,436,148
특별회계	6,171,533	5,870,840	-	300,693
의료급여	△ 876	-	-	△ 876
주차장	6,172,409	5,870,840	-	301,569

Ⅲ. 세출예산

□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합 계	182,154,449	162,727,395	19,427,054	100.0
운영위원회	2,233,942	2,124,538	109,404	1.2
시민행정위원회	161,906,316	144,985,387	16,920,929	88.9
재무건설위원회	18,014,191	15,617,470	2,396,721	9.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합 계	37,096,538	30,925,005	6,171,533	100
시민행정(의료급여기금)	41,394	42,270	△ 876	0.1
재무건설위원회(주차장)	37,055,144	30,882,735	6,172,409	99.9

□ 재원배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18	19,427,054	100	65	10,666,711	53	8,760,343
운 영 위 원 회	11	109,404	0.6	9	101,552	2	7,852
시민행정위원회	79	16,920,929	87.1	50	10,539,554	29	6,381,375
재무건설위원회	28	2,396,721	12.3	6	25,605	22	2,371,116

※ 세출경정(투자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	경정액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시설비	1,400,000	2,000,000	△600,000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600,000	-	600,00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8	6,171,533	100	7	6,116,233	1	55,300
의료급여특별회계	1	△ 876	0.0	1	△ 876		-
주차장특별회계	7	6,172,409	100	6	6,117,109	1	55,300

□ 운영위원회 소관 내용

<경상비>-----101,552천 원

- 직원 초과근무수당·국내여비·건강보험료 인상 부족분 ... 30,479천 원
- 명패제작·본회의장 의자커버교체·현황판 제작비 10,089천 원
- 의원 월정수당·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60,984천 원

<사업비>----- 7,852천 원

- 아트월 및 안내데스크 제작 6,572천 원
- 방송장비 구매..... 1,280천 원

IV.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규모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92억 5,098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55억 9,858만 7천원이 증가(13.2%)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21억 5,444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4억 2,705만 4천원이 증가(11.9%)하였고, 특별회계는 370억 9,6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7,153만 3천원이 증가(20.0%)하였습니다.
- 또한 연초부터 9회에 걸쳐 총 84억 930만 3천원의 간주처리가 있었는데, 일반회계는 84억 4,030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추경재원

- 추경재원은 총 255억 9,858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9억 9,090만 6천원과 조정교부금 20억원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3,614만 8천원을 합한 194억 2,705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억 7,084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56만 9천원을 합한 61억 7,240만 9천원입니다.

□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억 3,394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940만 4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1,821억 5,444만 9천원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 편성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이 대부분(83.6%)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 운영비와 사업비는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경비(16.4%)입니다.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원 초과근무수당·국내여비·건강보험료 인상 부족분(111~112쪽)으로 총 3,047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 2006년도 4월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5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인상 부족분 507만 9천원
 - 2006년도 공무원여비규정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인상 부족분 2,340만원
 -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제5대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물 정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111쪽~112쪽)로 총 1,7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원 명패제작, 본회의장 의자커버 교체, 현황판 및 안내데스크 등을 제5대의회 개원과 맞추어 재정비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고 효율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방송실 전원이 불규칙하게 공급됨에 따라 방송장비 전원공급기를 설치하여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비(113쪽)로 편성한 6,098만 4천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의원 보수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 의정비심

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144만 5천원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예산 5,763만원과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납부하게 된 국민연금 보험료 192만 6천원
- 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가 됨에 따라 기관과 의원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 보험료 중 기관부담금 142만 8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2.8]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2.8]